



알기 쉬운 하도급법 해설(5)

서 영 호

공정위 독점관리과 사무관

1. 내국신용장

1. 내국신용장의 개설(開設)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한다.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해 주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내국신용장의 미개설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수급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내지 대지급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3.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의 개설

수급사업자가 제조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I. 목적물의 검사(検査)

1. 검사기준 및 방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2. 검사시기 및 검사결과의 통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유권해석

(질의내용)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해 샘플방식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고 완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 중 불량품을 발견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양품(良品)과 교환(1:1)을 요구하는 것
 - 불량부품으로 인한 생산라인 중단으로 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 그 손해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보상 요구하는 것(손해비용 정산시 원사업자의 임율 적용)
 - 손해비용 보상요구시 수급사업자와 사전협의하에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나, 동일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자재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는 것
- ② 원사업자가 시장에 완제품을 출하한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량완제품이 발견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가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양품(良品)과 교환(1:1)을 요구하는 것
 - 시장에서 발견된 불량완제품을 원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귀책사유가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100% 보상 요구하는 것

(유권해석)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에 대한 검사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를 들면 목적물의 수량이 많아 샘플방식에 의한 검사를 하기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등)에는 상당기간을 초과한 경우라 할지라도 불량부품의 수리 또는 교환



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불량부품으로 인해 원사업자의 생산공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보상비용 청구방법은 양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될 것임.

다만,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게 됨.

② 완제품(원사업자의 브랜드)이 시장에 출하된 이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의 불량으로 인해 완제품에 결함이 발생되어 원사업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였다면, 불량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교환 요구하는 것은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하도급법에서 검사기준 방법 시기 및 검사결과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원사업자가 물품을 수령하고 장기간이 소요된 후, 반품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데 있음을 감안할 때 원사업자가 물품을 수령하고 지나치게 장기간이 경과된 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원사업자도 완제품 출하 이전에 당해 완제품에 대해 출하검사를 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는 원사업자와 발주자(또는 소비자)간 계약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비용도 있을 것이므로 보상비용 전액을 획일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4. 심결례(審決例)

- 사건명 : 대일화학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결 제93-11호]

- 사건내용

피심인 대일화학공업(주)는 수급사업자 회사에게 냉장고용 및 주방용 소취제(냄새제거제)를 제조위탁하고 1991. 5. 30 목적물의 일부(소취제 13,290개, 금액 22,176천원)를 수령한 후, 20여일이 지난 1991. 6. 19 ~ 6. 21 사이에 자신의 일방적인 검사기준 및 방법에 의해 당해 목적물을 불합격한 사실이 있으며, 이 목적물을 불합격 판정한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대리점을 통해 판매해 오다가 남은 나머지(소취제 11,467개, 금액 18,270천원)를 반품한 사실이 있음.

- 조치내용

피심인 대일화학공업(주)는 부당하게 반품한 소취제 11,467개를 지체없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18,270천원을 지급할 것.



III. 하도급대금의 지급

1.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가. 원칙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시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 수령일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납품받은 날을 말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고 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납품이 빈번하여 상호 합의하에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괄마감하는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

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시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본다.

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의 지급시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라.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의 지급시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2. 현금비율 유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건설위탁,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적용기



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위탁,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예시)

도급대금 수령		하도급대금 지급	
수령일자	결제비율(현금 : 어음)	지급일자	현금결제비율
		2. 8	예외 가능
2. 1	50 : 50	3. 5	50% 이상
		4. 5	50% 이상
5. 1	50 : 50		
5. 15	60 : 40		
6. 1	20 : 80		
		7. 1	43% 이상 ¹⁾
8. 1	40 : 60		
		9. 1	40% 이상

1)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5. 1, 5. 15, 6. 1 지급받은 것을 산술평균한 비율 [(50+60+20)/3]

② 현금비율 산정방법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 현금수령액/도급대금수령액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 : 현금지급액/하도급대금지급액
- 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하고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아래 결제수단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 현금
- 수표
-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영업의 허가 등록)에 의해 허가를 받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 ④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 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 ⑥ 현금비율 유지는 1999. 4. 1 이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적용한다.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의 판단은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본계약이 아니라 발주서 등에 의한 개별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 하도급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공정**

※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있어 『어음만기일 유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유권해석』 및 『심결례』 등은 다음 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용어풀이

내국신용장 內國信用狀

수출업자가 자기가 받은 원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견질(見質)로 원신용장의 통지은행에 의뢰하여 수출상품의 공급자에게 발행하는 신용장을 말함. 수출상품의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의 제시로 상품대금(商品代金)을 선취(先取)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에서는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保證)은 채무보증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함.

부당한 고객유인



소비자 경품류는 거래가액의 10% 이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만원 짜리에 1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면 10%를 초과 했으므로 부당한 소비자 경품류 제공



또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소비자 협상 경품의 경우는 행사기간 예상 매출액의 1% 범위내에서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